

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0. 8. 25.] [대통령령 제30973호, 2020. 8. 25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해 식품 등에 대한 압류·폐기 지시,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·정지,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공표 및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20년 8월 25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진영

● 대통령령 제30973호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
2.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
 - 가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에 대한 보고 접수
 - 나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·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
3.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·정지
4.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
5.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

6.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
7.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
8.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